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가 필요함에 따라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실시대상 사업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하고,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8333호, 2021. 7. 27. 공포, 2021. 1. 28.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포함하며,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그 보유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 장애정도 심사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가중처분 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처분권자의 자의적인 가중처분과 가중처분의 회피를 위한 불법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안제20조의3제1항 제4호)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에 법 제59조의 13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 추가(안 제36조)

다. 국민연금공단(정밀심사 의뢰기관)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추가(안 별표3)

라.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행위의 동기,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가중처분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제시 (안 별표5)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제36조 중 “판매시설 및”을 “판매시설,”로, “쉼터”를 “쉼터 및 법 제59조의13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로 한다.

별표 3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별표 5 제1호나목 본문 중 “위반행위의 정도·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장애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나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 기준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3(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법 제32조의4제1항제4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② ~ ④ (생 략)	제20조의3(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1항 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 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생 산물 판매시설 및 법 제59조의1 3제1항에 따른 장애인 <u>쉼터</u> 를 말한다. [별표 3]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 공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20조의5제2항 관련) 1.. (생 략) <u><신 설></u> 2.~8. (생 략)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 ----- ----- 판매 시설, ----- ----- 쉼터 및 법 제59조의13제 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 [별표 3]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 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20조의5제2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1의2.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 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2.~8. (현행과 같음)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
려하여 -----

-----.

<신설>

<신설>

<신설>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2. 일반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장
래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
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나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
하여 처분 기준을 늘릴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299